

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
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꽃임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8일

3. 제안이유

- 「식물방역법」에 따라 우리도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조례 명칭을 「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·운영 조례」로 변경
- 현실에 맞게 조례의 전부개정(안 제1조 ~ 안 제6조 등)
- 병해충에 대한 용어 신설(안 제2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식물방역법」에 따라 우리도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이 조례안은 본칙 10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- 조례명을 「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·운영 조례」로 변경하였습니다.
- 안 제1조는 기존 조례의 잘못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.
-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, 「식물방역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의 정의를 신설하였고, 기존 조례에서 제3조와 제4조가 제2조에 붙어 있는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.
- 안 제3조는 예찰·방제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근거 법령 약칭을 적용하였고,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는 예찰·방제단 구성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각각 운영, 임무, 식물방제관의 권한, 전문인력 등, 전문교육, 시·군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.
특히, 안 제8조에서는 일부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식물방역법」 제31조의4에서 조례로 위임한 병해충 예찰·방제단의 구성·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.
- 또한, 우리도 현실에 맞도록 병해충 예찰·방제단의 구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